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5. 12. 18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(2015.12.9)
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김갑수)

가. 제안이유

- 구의 출연금과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장학 사업을 추진하도록 영등포구 장학재단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2014년 10월 16일에 제정되었고 2015년 4월 17일에 「영등포구 장학재단」을 설립함에 따라 영등포구 장학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장학기금을 폐지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기영)

본 폐지 조례안은 2015.4.17. “영등포구 장학재단”이 설립되어 운용됨에 따라, 기능이 중복되는 기존 “영등포구 장학기금”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로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- 2009.10.1. 영등포구 관내 학생 중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인재를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고, 영등포구 장학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·관리 되어왔으나,
- 장기적인 교육발전과 교육사업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, 2014. 10.16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되고 2015.4.17. 영등포구 장학재단이 설립 되었으므로 기능이 중복되는 장학기금을 폐지하는 것임.
- 참고로, 2015년도 장학기금은 3억 3,992만 1천원이 조성되어 3억 2,54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 1,447만 1천원은 영등포구 일반회계로 여입 조치될 예정임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 97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11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구의 출연금과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추진 하도록 영등포구 장학재단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2014년도 10월 16일에 제정 되었고 2015년 4월 17일에 「영등포구 장학재단」을 설립함에 따라 영등 포구 장학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장학기금을 폐지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

(1) 규제심사 : 심사실시(대상사무 없음)

(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5.10.22. ~ 11.11. / 20일간)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의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기금의 잔여액은 영등포구 일반회계로 여입한다.